

ER-611-18

##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

[제 정 2006. 11. 27]

[1차개정 2021. 02. 26]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공개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여 정보 공개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코자한다.

제2조(공개형태) 정보공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구공개 : 광주과기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
2. 정보제공 : 광주과기원이 보유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와 경영위험공시대상 정보를 포함한다.
3. 정보목록 공개: 광주과기원이 보유·관리하는 전자문서 중 목록공개를 결정한 전자문서의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6.>

제3조(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국민
2. 법인, 단체: 대표자의 명의로 가능
3. 외국인
  - 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다.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대상정보) 광주과기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제5조(비공개 정보의 범위) ①비공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6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광주과기원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광주과기원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담당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광주과기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성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정보 범위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2. 26.]

## 제 2 장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제6조(정보공개청구의 청구) ①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접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정보공개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 또는 정보공개 주관부서(문서관리 주관부서를 말하며, 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즉시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등재시켜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의 판단) 정보공개 청구시 정보의 공개, 비공개에 관한 판단은 처리부서의 장이 한다.

제9조(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2021. 2. 26.>

제10조(제3자의 의견 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11조(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부서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공개여부의 결정통지) 처리부서에서는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방법 등이 명시된 결정통지서를 주관부서의 통제를 받아 공개를 결정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제14조(비공개 결정시의 통보) 처리부서에서는 정보의 비공개 결정이 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의 통제를 받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 하여야 한다.

## 제 3 장 정보공개방법

제15조(공개원칙)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 할 수 있다.

제16조(공개 대상별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3. 영화필름 : 시청
4.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5.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6.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7.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제17조(공개의 종류) 정보공개는 고지에 의해서 원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외처리 할 수도 있다.

1.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할 수 있다.
2.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를 할 수 있다.
3.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공개 할 수 있다.

제18조(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제19조(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를 위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비용이 경미한 경우 면제할 수 있다.

## 제 4 장 경영위험요소 공시

제20조(공시목적) 장래의 과도한 경영부담사항을 공시함으로써 경영진의 신중한 의사결정에도도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제21조(공시기본방향) 장래의 과도한 경영부담 사항에 대하여 기관이 자율적으로 공시대상을 결정하여 주요 핵심내용을 일괄 공개한다.

제22조(공시대상) 광주과기원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무구조, 경영환경, 투자결정, 손익구조 등에 관계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 대상으로 하며, 공시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사유발생일을 기산일로 한다.

1. 시설투자, 법인출자, 사업확장, 교직원처우개선 등에 관한 협약·협정 및 기관장 공약 사항(당해년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우는 제외)
2.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 제조, 물품구입(단, 기관고유사업 제외)
3. 기타 장래 경영부담을 초래할 사항

제23조(공시방법) 광주과기원은 관련 자료의 비치, 열람, 복사 등 공개여건을 조성하고, 기관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한다.

제24조(공시내용수정) 기 공시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비공개대상의 주기적 검토)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반기별로 공시여부를 재검토하여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제 5 장 불복구제 절차

제26조(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광주과기원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제3자의 이의신청) 당해 제3자가 비공개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과기원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 7일 이내에 광주과기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이의 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의신청 결과 통지) ① 처리부서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 통지와 함께하여야 한다.

제30조(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따른 제반사항은 관련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제31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필요서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 칙 <2006. 11. 27>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2. 26>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